

인증품 생산·취급 또는 판매 실적 보고서

「축산법 시행규칙」 제47조의12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품의 생산·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제출합니다.

인증기관

귀하

사업자	법인(단체)명		생산자 수(취급자 수)			
	대표자 성명		인증번호			
	연락처		제출일			
출 하 내 용	1. 출하기간:					
	2. 인증구분	3. 품목	4. 계획량(kg)	5. 내수/수출	6. 출하처/국가명	7. 출하량(kg)

작성 방법

1. 출하기간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인증품 출하기간을 월단위로 적습니다. (예시: 1 ~ 12월, 5 ~ 12월, 7 ~ 8월 등)
2. 인증구분은 무항생제축산물 생산자, 취급자 중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.
3. 품목에는 인증받은 품목(예시: 젓소 시유, 육계 식육 등)을 모두 적습니다.
4. 계획량은 인증, 인증 갱신 신청 시 작성하여 제출한 계획량을 적습니다.
5. 국내에 판매한 건은 내수, 해외로 판매한 건은 수출로 적습니다.
6. 내수인 경우 출하처는 ①대형유통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, 농협유통 등), ②공공급식(학교급식, 군급식 등), ③일반급식(기업체 등), ④전문유통업체(생협 등), ⑤로컬푸드매장, ⑥도매시장, ⑦가공(취급)업체 ⑧직판(온라인, 전화주문 등), ⑨기타(직접 거래) 중에서 한 가지를 적고, 수출인 경우 국가명(예시: 미국, 프랑스, 베트남 등)을 적습니다.
7. 출하량은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을 적습니다.

※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.